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86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
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 전반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여성들의 문화와 가치관 등 여성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은 미흡한 실정임. 이에 본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 여성사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, 지역 여성 역사를 재조명하여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여성사 연구 사업 및 위탁 관련 사항 (안 제3조)
- 여성사 연구 지원 규정(안 제4조)
- 여성사 교육 및 홍보 관련 지원 사항(안 제5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여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집·조사·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- 우리 역사의 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여성들의 문화·가치관 등 여성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은 미흡한 실정임.
- 하지만, 여성가족부의‘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(2023~2027)’에 정책 세부과제로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‘여성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인식 확산’을 포함했고,
- ‘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2024~2028)’에도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로 지역 여성인물에 대한 전시 활동 확대 등 여성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 사업 등이 포함되는 등 여성의 역사적 발자취와 고유한 가치관, 문화자료를 바탕으로 한 ‘여성사’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- 이에, 충북지역 여성들의 여성사 연구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### ○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. (안 제1조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,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○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 (안 제2조)

-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인 “여성사 연구”는 충청북도 지역 여성의 역사·생애·문화·사상 등의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, 연구를 담당하는 “연구기관”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”으로 정의하고 있음.

### ○ 여성사 연구 사업 및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)

- 해당 조항은 도지사가 도 여성사 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,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적 수행을 위해 도내 연구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조례안에 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행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지난 2020년 8월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‘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 시설 운영’사업과 다양한 여성사 연구 및 사료편찬 등에 대한 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### ○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해 규정함. (안 제4조)

-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및 연구 필요 자료, 자료의 수집, 보존을 위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
- 여성사에 대한 인식 및 관심 확대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정체성 강화는 물론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, 홍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, 정의, 지원 사업, 지원의 범위 등 지역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거쳤음.
- 이에, 충청북도의 여성사 연구 및 연구 활용을 통해 여성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활동을 재조명하고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여 여성의 주체성 확립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사 연구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지역 여성의 역사·생애·문화·사상 등의 연구를 말한다.
2. “연구기관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 여성사 연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여성사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자료의 전시·보존·공유 사업
2. 여성사 편찬, 영상 제작 관련 사업
3. 여성사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·보존·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에 사

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도 여성사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
2.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3.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
4.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·보존·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 지원) 도지사는 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37조(양성평등 문화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, 방송, 잡지,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, 편견,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,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, 편견,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,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

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우리 역사의 발전 전반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여성들의 문화·가치관 등 여성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등은 미흡한 실정
- 충북 지역여성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해 충북 여성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등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지원사업 등) 및 안 제4조(연구지원 등)
- 안 제5조(교육 및 홍보 지원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 ~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, 2025년 추진사업 기준으로 여성사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비용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

- 연간 37,860천원, 향후 5년간 185,860천원 소요
  - 여성독립운동가(홍보리플릿, 홍보물품, 문화해설 강사료 등) 8,670천원
  - 지역 여성사 연구 등 29,190천원

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(043-220-3910)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37,860	37,00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여성독립운동가	8,670	7,000	7,000	7,000	7,000	36,670
지역 여성사 연구 등	29,19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49,190
재원 조달	37,860	37,00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7,86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	지방세	37,860	37,000	37,000	37,000	185,86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